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4. .
법제사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10일, 박균택의원 등 16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5.11.11.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4. 8.) 상정 · 축조심사 및 의결
(대안반영폐기)

제3차 법제사법위원회(2026. 4. 22.)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
및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박균택 의원)

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,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 · 세탁되는 범죄의 ‘조직화 · 국제화 · 첨단화 현상’이 가속

화하고 있음.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,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.

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. 이에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, 불법 온라인 도박,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미국, 독일 등 주요국은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민사·행정 또는 형사절차를 도입했거나,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및 국제연합(UNCAC) 등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보이스피싱, 불법 온라인 도박,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, 불특정,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,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5.11.11.)로
생략

4. 대체토론의 요지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5.11.11.)로
생략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)

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,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
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선의의 제3자 독립몰수 허용,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
한 소급입법 등에 대하여 위헌소지 이유로 반대의견이, 국민의 정서,
소급입법 사례(과거 공소시효 예외 합헌) 등의 이유로 찬성의견이 다
수 있었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